

2024 대전·세종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관광공사는 대전·세종 관광기업의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기업·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4 대전·세종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 07. 22.

대전관광공사 사장

1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4 대전세종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지원규모 : 관광기업 4개 사, 사업화 지원금 총 50백만원
- 지원대상 : 대전 세종 소재 관광사업을 3년 이상 영위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지원내용 : 디지털 역량 진단 및 전략수립을 위한 1대1 매칭 컨설팅, 디지털 분야 전환을 위한 자금 최대 15백만원 지원
- 접수기간 : 2024. 7월 22일(월) ~ 8월 5일(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hj@djto.kr)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메일/파일제목 : [디지털전환]_업체명(신청자명)
- 접수 확인 및 문의 :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 042-250-1465

2 세부내용

□ 1대1 매칭 컨설팅 지원

-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 11. 15.(금)까지
- (지원내용) 디지털 역량 진단 및 실행 전략 마련(최대 3회)

□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 11. 15.(금)까지
- (지원규모) 총 50,000천원 *15,000천원 2개 사, 10,000천원 2개 사(차등지급)
- (지원내용)

분야		내용(예시)
고객 관리	고객관리 및 경험관리, 데이터 분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관리(CRM) 및 고객경험관리(CEM)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개편시 고객관리 시스템 연동 또는 기존 시스템 고도화 등 ◆ 내/외부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관광 상품 혁신	디지털기술 기반 스마트관광 상품·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VR 등 실감형 상품 개발 ◆ 비대면 랜선여행 상품 개발 ◆ 구독형 여행 서비스 개발 ◆ 자사 홍보/마케팅을 위한 검색엔진최적화(SEO)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온라인 마케팅 채널 구축 및 활용	자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판매/유통 관련 채널 구축,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모바일 기반 채널 신규 제작 및 고도화 - 웹 또는 앱 기반 홈페이지 제작 및 고도화 * 예약결제 등 필요한 기능 구현 ◆ 스마트 스토어 채널 구축 ◆ CI/BI/회사소개서/영상/음성 콘텐츠 제작
기술/인프라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챗봇 기반 실시간 고객 응대 시스템 구축 ◆ IoT, Beacon,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 클라우드 서버 개발, 이전, 고도화 등 이용자 편의성을 위한 기술 도입
경영 혁신	사내 디지털화를 위한 경영관리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정보관리 디지털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 협업/화상회의/계약관리 등 비대면 업무 시스템 도입 ◆ 경영, 실적 등의 업무 자동화 솔루션 도입 등
기 타	기타 디지털 전환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

○ (지원방법)

-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을 원칙으로 함
-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선집행, 후정산)**하며, 자부담 지출 확인 후 최종지급
- 사업화지원금 사용에 대한 부분은 최종 선정 후 별도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
- 정해진 지원 항목 내에서만 예산 집행 가능 ※**붙임** 참고

□ 신청자격 제한 ※ 아래 1개 이상 항목에 해당 시, 참가 불가

-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가 2021. 7. 23. 이후인 자*총 36개월 미만
- 관광과 관련이 없는 아이템으로 공모에 신청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에서 규정한 창업제외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려는 자
- 공모에 신청한 동일 아이템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업화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선정되어 지원받을 예정인 자
- 기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기 출시된 제품·서비스 등을 도용하여 사업아이템으로 신청한 자
- 휴업 중인 자 ※ 공모 마감일(2024. 8. 5.) 이전 영업개시 후 정상영업할 경우 가능
- 공고일 기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예외조건]

- ① 공모 접수 마감일('24. 8. 5.)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자
- ③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 ※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관련자료 이메일 제출 필수

-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심사 및 제출서류

- 선정절차 : 적격검토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결과발표
- (적격검토) 제출서류 적격여부 및 중복수혜* 점검
 - * 2024년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화 자금 수혜 여부
- (1차 서류심사) 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사업계획서 심사
 - ※ 8개 사 이내 고득점 순 선정
- (2차 발표심사) 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PT발표 심사
- (결과발표) 개별안내, 대전관광공사·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심사기준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1	사업의 적합성(20점)	• 신청조건 부합 여부 등 사업에 대한 적합성
2	실현 가능성(20점)	• 구체적인 목표설정 여부 • 시장분석 및 사업 실현 가능성 •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3	사업의 구체성(20점)	• 사업현황 및 문제점 자체분석 가능 • 추진일정 및 사업화 자금의 사용계획의 명확성
4	사업의 기대효과(20점)	• 대전, 세종 관광산업의 발전 기여도 • 자사의 성장 기여도
5	사업 지속성(20점)	• 해당 사업 종료이후, 지속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및 발표심사 모두 동일한 평가항목 적용 ■ 최고점, 최저점 제외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고득점 순 선정 ■ 접수 미달 시 모집연장 진행 		

- 가점사항(선택): 한국관광공사 주관 DX아카데미(8. 2) 참여시 가점 부여(3점)
 - 신청 링크: <https://url.kr/larc38> / 신청 기간: 2024. 07. 31. 까지
- 결과발표 : 2024. 8. 19.(월) / 개별안내 및 공사 홈페이지 공고
- 심사 관련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출서류 양식 미준수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모방 및 표절 등 타인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였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최종 선정 후 취소함 3. 필요할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애초 제출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짐 4. 제출된 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5. 본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대전관광공사 고유권한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4 신청 ·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24. 7. 22.(월) ~ 8. 5.(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제출방법	제출처
이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일 주소) hj@djto.kr ■ (메일 제목) [디지털전환]_업체명(신청자명) (예) [디지털전환]_관광스타(홍길동)

○ 필수 제출서류

순번	제출방법	제출처
1	[서식1] 체크리스트	■ 서명날인 여부 확인
2	[서식2] 신청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3	[서식3] 사업계획서	■ 신청서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5	[서식5] 매출실적 증빙자료	■ 전년도(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6	[서식6] 사업자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공모사업 자격요건 확인 - 대전·세종 소재 관광 융복합 업종 등 관광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영위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기타) 별도 추가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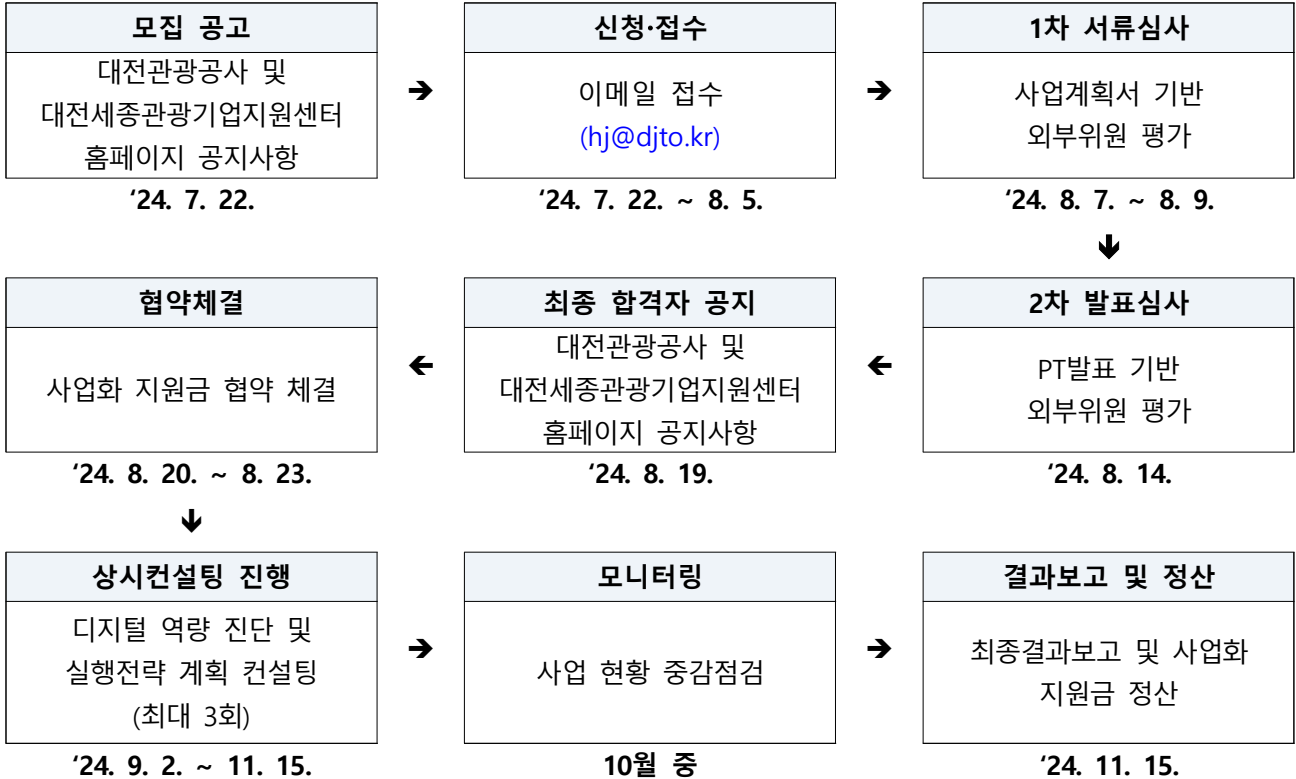
※ 반드시 작성 후, 1개의 PDF파일로 제출 *날인 누락 시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 상기 제출서류는 **제출 필수이며, 누락 시 자동탈락**
 - 매출실적 증빙자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 및 카드매출 영수증 사본 첨부
- 제출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발각 시 선정취소**
 - 선정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사업 참여 제한, 환수조치 등 가능
- 신청·접수 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 마감**
 -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니, 마감 기간 이틀 전 제출 요망
- 신청서의 항목은 공백 없이 모두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의 **서명 필수**
 - 서명/인감 이미지를 서명란에 삽입하거나, 그리기 도구를 활용해 서명

5 일정안내 및 문의처

○ 진행 일정(안)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문의처 :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042-250-1465)

6 유의사항

-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어진 사업 기간 내에 지원금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추후 사용 불가
-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향후 1년간 사업실태 조사(사업영위유무, 매출, 고용 등)에 성실히 응답해야 함
- 본 사업은 『관광진흥법 제 3조』에 의거, 관광진흥법상의 관광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대전, 세종 소재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조건 및 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매출실적 증빙자료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제출서류는 발급일이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평가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이의 신청 불가

붙임

사업비 지원 기준 및 범위

비 목		기 준
재 료 비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사업계획서 상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상품, 서비스, 재화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제품, 데이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유/무형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제품(Io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함 • 협약기간 내에 납품 및 사용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 • 재료 또는 원재료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유 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비 총액은 지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운영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음 ※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재료 구입 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 할 경우, 사전승인신청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 ※ 재료비를 대여형태로 진행하는 경우 (렌탈, 리스 등), 협약기간 내에 집행하는 대여료에 한해 집행 가능 ※ 단순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 또는 단순소모성 부품(USB증폭기 등) 등 구매 불가
외 주 용 역 비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 사업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경우 집행 • 외부 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 외주용역대상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경험 보유 필요 • 외주용역비는 수행완료 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금금, 잔금)으로 집행 가능. 선금금이 1천만원 이하는 지급각서 활용,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해야함. 선금금은 총 용역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유 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주용역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집행 불가 (예시 : 과업범위 이하의 개발결과물 도출 등) ※ 외주용역의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 외주용역 2,000만원 이상(공급가액) 또는 1년 이하 업력의 업체와 외주용역 계약 체결 시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전문업체(업력 1년 미만)에 과업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아이템과의 연관성, 과업 수행 가능성, 보유역량, 용역비용, 과업 수행기간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함 ※ 당해년도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 간 거래, 기업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과의 외주용역 거래가 불가함이 원칙 ※ 프리랜서 중계서비스를 통한 사업비 집행 불가 (외주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반드시 있어야함) ※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양산목적의 금형제작비는 집행 불가

비 목		기 준
유형자산취득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관광디지털전환을 위해 필요한 일정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H/W, S/W를 구입하는 비용 유형자산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납품 가능해야 함
	유의사항	<p>※ 유형자산비 총액은 지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관광디지털전환 정의의 근거하여 디지털 혁신을 위한 장비, 기계, 설비, H/W, S/W 등의 구입은 운영기관과 협의 후 집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통신기술(블루투스, RFID 등)이 포함된 설비 : 스피커, WFI 송/수신기, Beacon 등 - H/W 구입 : 서버, IoT기기 등 - S/W 구입 :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을 근거로 디지털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S/W 또는 프로그램 - 기타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유형의 장비 <p>*생활가전제품, 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일반 사무용품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MS-Office, 한글, 백신 프로그램 등) 구매 불가</p> </div> <p>※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구매 유형자산을 확인할 수 있음</p> <p>※ 본 사업비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임의처분 불가하며, 자산관리대장(별도양식)에 등록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3년 간 유지·관리 하여야 함(폐기 및 임의처분 등 불가)</p>
지급수수료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관광디지털전환을 위해 수행하는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 ① 등록비 : 디지털 전환을 위한 S/W 및 기술 등록비 ② 가입비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외부 기술 및 시스템 사용을 위한 가입비 (일회성) ③ 구독료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외부 기술 및 S/W 사용 시, 부과되는 월별 사용료 ④ 임대비 : 외부 시스템 또는 기술을 임대할 때, 계약 기간 동안 지불되는 임대료 ⑤ 기술보호비 : 기술 임차(갱신) 등에 지급되는 수수료 ⑥ 저작권료 : 기술 또는 시스템 사용에 의해 지불되는 저작권 수수료 ⑦ 기타 수수료 :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급되는 수수료
	유의사항	<p>※ 등록비, 가입비 명목으로 집행하는 비용은 협약기간 내에 계약한 경우에만 집행가능하며, 협약 기간 이후 부과되는 비용에는 집행 불가 (도메인 등록비,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 등)</p> <p>※ 구독형 서비스 구입 시, 협약기간 내에 부과되는 비용만 집행 가능 (협약기간 이후에 부과되는 구독료는 집행 불가)</p> <p>※ 모든 지급수수료는 협약기간 내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에 한 해서 집행이 가능하며, 협약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집행불가</p> <p>예시) 협약기간이 '24. 8. 20. ~ 11. 15.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하며, 11. 15. 이후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집행불가 (협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 사전결제 불가)</p>

1.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가. 지원금 및 자부담은 부가세가 포함 기준이며, 최종 자부담 지출 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되면 **사후정산으로 지급**

나. 지출증빙으로 적격증빙(법인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적격증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추가적인 증빙을 제출해야 함.(사전문의요망) 단, 모든 영수증은 5만원 이상의 카드 영수증만 인정하며, 현금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개인카드 영수증 사용 불인정 다. 모든 집행비용은 적격증빙, 이체확인증, 성과품(결과보고 등)을 제출해야 함 라. 불입 지출 증빙양식을 준수하여 2024년 1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함

2. 지원금 정산

- 가.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자부담(기업 부담)을 원칙으로 함
 나. 재단은 기업의 정산서 및 성과물에 대하여 검토 후 증빙서류가 부실한 경우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단은 적정금액으로 감액조정하거나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허위로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단은 지원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음 라. 자부담 집행내역이 확인이 완료되면, 지원금 정산이 가능함

3. 성과제출 : 참여기업은 협약기간 내 추진성과를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맞춰 금년 **11월 15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함

4. 제출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1부(사진 또는 기타 증빙자료), 지출증빙자료
지출 증빙자료	재료비	• 사전승인신청서(별지 1호, 500만원 초과 시), 검수조서(별지 2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외주 용역비	• 검수조서(별지 2호), 결과보고서(별지 3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포함), 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 필요시 제출: 사전승인신청서(별지 1호), 지급각서(별지 4호), 이행보증증권 등
	유형자산 취득비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검수조서(별지 1호),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자산관리대장(별지 5호)
	지급 수수료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임대(등록/가입/구독 등) 계약서, 견적서 등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목별 계약 및 목적에 따라 계약대상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이 일치하여야 함 - 견적서 제출 시, 공급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비교견적서 필수제출 - 계좌이체 시, 이체확인증/전자세금계산서 제출 - 운영기관이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